

## 신탁계약서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 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p> <p><b>2. <u>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제1호(주식)</u></b></p>
<p><b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3. <u>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</p>	<p><b>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<b>3. <u>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b></p> <p><b>4. <u>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u></b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b>제1항제3호 및 제4호</b>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</p>

<p>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	<p>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~7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8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<p>②~⑨ (생략)</p>	<p><b>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투자신탁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</p> <p><u>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</p> <p><u>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</p> <p>②~⑨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부칙</b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